

(2) 소작쟁의의 전개

순천에서는 1922년 12월 13일, 서면의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세의 지주부담을 요구하며 면사무소에 진정을 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다음해 1월까지 각 면의 소작인은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감액 등을 요구하며 군당국에 진정을 했다. 이와 아울러 12월 28일에는 낙안면에서 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고, 이것을 효시로 각 면에서 소작인조합이 결성되었다. 1923년 1월 6일에는 각 면 소작인조합의 대표자와 군당국 사이에 교섭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지주회의를 열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군당국에서는 그후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소작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런 가운데 1923년 1월 22일 순천군은 지주대표 27명(조선인 19명, 일본인 8명)을 모아 지주임시총회를 열어 소작인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도록 했다. 그 결과 먼저 조선인 지주 김학모가 소작인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하여, 일본인 지주 금곡일이(金谷一) 등이 동의하였다. 당시에 군당국자는 지주에게 소작인의 요구를 승낙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지주의 이익만을 옹호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 지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상사면의 지주 두 사람이 지세를 소작인에게 반환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 지세반환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122명의 지주가 지세를 반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지주는 지세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려고 체납했으므로, 순천군청에서는 그들에게 경고문을 낸 경우도 있었다. 김학모는 면직원과 마름을 시켜 5개 면의 소작인에게 지세를 독촉하고, 만일 소작인이 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의 지주총회에서 소작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발언했던 김학모가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던 것을 보면 그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졌거나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주가 실제로 소작인에게 지세를 반환하였으므로 완전히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소작권박탈에 반대하는 투쟁이 순천군 각 면에서 전개됐다. 1923년 4월, 낙안면에서 조용현 등 3명의 지주가 '면소작회에 반대할 목적으로' 소작권을 일체히 박탈했으므로 이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어서 5월에는 황전면 해룡리에서 소작인조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작권이 박탈되자 소작인 100여 명이 '공동경작동맹'을 조직하여 실력으로 경작권을 지키려는 투쟁을 전개했다. 더욱이 6월에는 황전면의 다른 마을이나 순천면·쌍암면 등지에서도 '공동경작동맹' 투쟁을 전개하여 모두 소작권을 회복하였다. 위의 투쟁은 모두 각 면의 소작인조합을 기반으로 벌어졌다. 이 '공동경작동맹' 투쟁은 같은 해 3월 진주 명석면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동경작동맹' 투쟁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 '공동경작동맹'을 통한 경작권 확보투쟁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공동경작의 관행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적 결합이 소작인조합의 결합유대를 가능케 했다. 많은 조합에서 규칙위반자나 탈퇴자에 대해서는 노동력 원조를 거부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리기로 결의했다. 풍산소작인회에서는 회원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작인회를 통할 것이며, 본인이 비회원의 일을 해주는 경우에도 소작인회에 연락하여 회원 중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하기로 한 결의가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추수기가 되자 소작료를 4할로 하려는 투쟁이 전개됐다. 서면에서는 김학모 등이 소작료를 지난해보다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소작인조합은 10월 11일 임시대회를 열어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하여 상사면·해룡면·쌍암면·순천면에서도 김학모·서병규 등이 소작료를 올리자, 각기 임시대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

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아일보』의 보도가 없는 관계로 알 수 없으나, 쟁의의 대상이었던 지주 중 서병규, 금곡일이, 박창서가 다른 면에서 소작인의 요구에 응해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던 것을 보면, 이 경우에도 역시 4할을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요 투쟁대상이었던 지주 중에서 김학모는 2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종익·김종필도 2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순천 제1의 지주였으며,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순천지방임원회 의장이었다. 서병규 또한 대지주이면서 순천지방청년회 의장이었다. 금곡일은 대금업·도정업·운수업을 경영하였으며, 1922년 당시에 보성군을 중심으로 40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후 순천, 광양 등지에 소유지를 확대하여 1925년에는 992정보의 토지를 소유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이렇게 소작인들의 치열한 투쟁대상이었던 지주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운동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조선인지주를 일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를 위한 지주(支柱)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천의 소작쟁의는 봄에는 소작권이동 반대, 가을에는 소작료증액 반대투쟁으로 전개되었지만 특히, 일본인영농회의 농장이 많은 곳에 소작권이동이 심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소작쟁의의 경우 26.2%가 소작권이동으로 발생했다.¹⁾

천전교이(淺田喬二)는 1923년 이후 소작쟁의의 원인으로 소작권이동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지적하여 “소작료관계 투쟁에서 토지관계 투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였다. 소작권에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소작조건 개선투쟁(소작료관계 투쟁)이 기본적인 것이니만큼 소작인의 투쟁이 토지요구 투쟁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당시 단일투쟁으로서는 최대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던 암태도(岩泰島) 소작쟁의와 재령의 대(對) 동양척식주식회사 투쟁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것은 192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농민운동이 경제적 요구를 기본문제로 삼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권력과의 대결이라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1) 주봉규, 앞의 책, 221쪽.